

【안사공동체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대상자 및 정원

- ①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 등급을 받은 수급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 3.4.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 ②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수급자
-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
- ④ 입소 정원은 48명으로 한다.

2. (모집방법 및 입소절차 등)

- ① 시설은 시설 이용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급여제공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 홈페이지 관리 및 정기간행물 제작, 현수막 홍보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수급권자들의 시설 이용 및 기관 정보 확보 및 정보공유를 증진시켜야 한다.
-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수급권자 및 보호자를 무분별하게 유인 . 알선하거나 유인 . 알선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각종 수급질서 문란행위(예:본인부담금 면제 혹은 경감행위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관계법령에 따른 입소절차에 의해 입소하여야 한다.
- ④ 시설입소자는 입소 전 1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 법정전염성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코로나검사결과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입소정원 만료시 대기자 명부에 따른 대기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으며 대기자 명부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 ⑥ 시설입소는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와의 입소계약을 통해 완료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입소 승인 절차에 따라 입소하여야 한다.
 - 입소이용의뢰서(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 입소자 명의 통장 사본
 - 입소 전 전입신고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① 시설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들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은 수급자(보호자)와의 입소계약 체결을 통하여 시설 입소에 따르는 책임과 권리, 비용부담, 서비스 제공 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공유를 통하여 수급자의 질 높은 수급권 확보 및 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 ③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하며 계속 입소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갱신 신청을 통해 재발급 받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은 이후 15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⑥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인정등급,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⑧ 수급자(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1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입소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① 본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노인요양시설 수가를 적용하여 개인별 등급에 따라 총급여의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 ② 병원 진료비 및 약재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이며 진료 전 보호자 상담을 통해 진료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긴급한 상황의 경우 선 조치 후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도록 한다.
 - ③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기타 비용 부담액
 -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병실침실료 등

- 공단 급여 수가 (2023.01.01.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5등급	
	2.3명 미만	2.3명 이상	2.3명 미만	2.3명 이상	2.3명 미만	2.3명 이상
일반	78,250원	81,750원	72,600원	75,840원	66,950원	71,620원

- 본인 부담률 및 1일 수가 부담금

구분	등급	일반 (20%)		감경 (12%)		감경 및 의료 (8%)	
		2.3명 미만	2.3명 이상	2.3명 미만	2.3명 이상	2.3명 미만	2.3명 이상
본인 부담금 (1일)	1등급	15,650원	16,350원	9,390원	9,810원	6,260원	6,540원
	2등급	14,520원	15,168원	8,712원	9,100원	5,808원	6,067원
	3등급	13,390원	14,324원	8,034원	8,594원	5,356원	5,729원

- 본인 부담금 월별 수가 산정표 (2023.01.01.기준)

구분	등급	일반 (20%)		감경 (12%)		감경 및 의료 (8%)	
		2.3명 미만	2.3명 이상	2.3명 미만	2.3명 이상	2.3명 미만	2.3명 이상
본인 부담금 (1일)	1등급	469,500	490,500	281,700	294,300	187,800	196,200
	2등급	435,600	455,040	261,360	273,020	174,240	182,010
	3~5등급	401,700	429,720	241,020	257,830	160,680	171,880
비급여	식사+ 간식	153,000원 (식재료비 1일:식사 3회* 1,700 + 간식 2회*0=0 =>5,100원*30일 기준)					
합계	1등급	622,500원	643,500원	434,700원	447,300원	340,800원	349,200원
	2등급	588,600원	608,040원	414,360원	426,020원	327,240원	335,010원
	3~5등급	554,700원	582,720원	394,020원	410,830원	313,680원	324,880원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⑨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4.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입소자가 청결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부대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 연계 의료기관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이에 응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기타 이유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통보할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원 절차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책임질 의무
6. 기타 시설 이용에 따르는 시설규칙을 이행할 의무

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 ① 시설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장기 부재로 인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감염성 질환, 정신적 문제, 그 외 공동생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
- ② 시설은 시설보호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체납내용을 설명하고 조속한 납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납부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청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수급자(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7조 8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④ 이 계약은 입소자의 사망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경우 자연 해제된다.
- ⑤ 시설은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시설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수급자(보호자)는 규정에 의한 퇴소 통지를 받았을 경우, 시설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하고 수급자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급자(보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⑦ 시설은 수급자가 퇴소할 경우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수급자(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아 동거 어르신들의 안전 및 시설 운영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의를 통해 전원 혹은 재가 조치를 해야 한다.
- ⑨ 시설은 시설입소자의 건강 상태 등이 입소 전과 확연히 달라 입원 치료 등 적극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통상적인 의료서비스 등으로는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전원조치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요양급여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단,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침대 및 침구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입소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② 기본 간호급여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소모품성 약품 외 별도로 구매하는 약품(예: 인사돌, 인슐린 주사바늘, 당뇨스틱 등)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③ 병원 진료에 따르는 진료비 및 각종 검사비, 약재비, 차량 이용 등과 관련된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며 병원 진료 시 수급자(보호자) 동행이 원칙이나 생계유지 등의 목적으로 동행이 어려울 경우 시설에 그 내용을 공지하여 병원 진료에 따르는 제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1회 실시하는 독감예방주사 및 감염병 검사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행 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물리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 ⑥ 급식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식재료비는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방문 진료 등과 관련된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은 시설에 별도 비치된 입소계약서에 의하며 특별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규정에 의한다.

1.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등에 관해 특별한 보호(수급자 제재)를 제공할 수 있다.
 - 거주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①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재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상황과 제재 종류 및 방법, 제재 전 절차, 제재 경과기록, 제재 후 상태 변화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②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제재)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③ 합숙용(2인실 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거주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침실(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금액은 사유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가 간 약정에 따른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침실 이용에 따른 비용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이며 사유 발생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다.
-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 등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① 시설은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수급자(보호자)의 요청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병원 진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정기 진료 및 투약 관리의 사유로 병원 진료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일시, 내용,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동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행이 어려울 경우 진료 및 검사 내용, 처방 내역 등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구두로 설명하여 수급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수급자의 건강악화 및 기타 다른 사유로 병원 진료가 신속하게 필요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일시, 내용,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동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호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고 진료 동의 절차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먼저 진료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다.
- ④ 질식, 쇼크, 심정지, 뇌출혈, 낙상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먼저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119센터를 이용하여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위 내용을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⑤ 야간 근무 중 제4항의 사유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먼저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119센터를 이용하여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시설장과 보호자에게 위 내용을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⑥ 시설은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방문 진료 시 수급자(보호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진료 혹은 시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③ 시설 입소자는 공용부분을 시설 관리자 및 동거 어르신이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용 침실을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 거주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 ④ 시설 입소자는 개인 침실에서 애완견, 물고기 등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 ⑤ 시설 입소자가 계약종료일까지 침실을 명도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명도일까지(이하 '불법거주 기간'이라고 함)의 관리비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시설 입소자 혹은 보호자는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의 부주의 및 고의로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의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퇴소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계약 기간의 종료 시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① 시설은 화재 등 재해와 시설 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책임보험(대인, 대물, 화재, 가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은 1차적으로 기관에 있다. 단, 인지능력 등이 있는 어르신으로써 관계 종사자의 관리 및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고 발생에 따른 귀책사유는 사고 경위 및 관련 자료(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사고 발생 시 종사자의 과실 및 고의 여부는 사고 경위를 통하여 파악하도록 하며 과실 및 불가항력적인 과실의 경우에는 구성권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 및 피해 정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 ③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④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보호자 또는 가족이 적극적인 의료행위 및 병원 진료 등을 거부하여 자연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 본인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 본인의 부주의 또는 임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7. 보행 가능 어르신으로써 보행 중 수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8. 시설 외 종교행사, 병원 진료, 외출, 외박 등 시설 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보호자 또는 어르신의 부주의 또는 임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⑤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⑥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소계약서에 의한다.